



자영업자인 경우

목차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세금 납부	1
근로 크레딧	2
순소득 계산하기	2
선택적 방법	2
소득 신고 방법	3
가족 사업의 경우	3
사회보장국에 연락하기	3

사회보장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피고용인들입니다. 이들의 고용주는 사회보장 세금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분담금을 맞추어 국세청(IRS)에 세금을 내고 급여를 사회보장국에 보고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반드시 자신의 소득을 보고하고 세금을 IRS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혼자서 또는 동업자로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이나 전문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귀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연방 소득세를 보고할 때 귀하는 소득을 사회보장국에 보고합니다. 순소득이 연간 \$400 이상 되면, 제출하는 다른 세금 양식들과 더불어 Schedule SE에 소득을 적어 보고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세금 납부

피고용인으로 일하는 경우, 귀하와 고용주는 각각 소득 \$128,400까지 사회보장 세금 6.2 퍼센트를 납부하고 모든 소득에서 메디케어 세금으로 1.45

퍼센트를 납부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순소득 최고 \$128,400에 대해 사회보장 세금 12.4 퍼센트를 납부하고 전체 순소득에서 메디케어 세금으로 2.9 퍼센트를 납부합니다. 수입이 \$200,000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 하는 경우 \$250,000) 이상이면, 메디케어 세금으로 0.9퍼센트 이상을 더 내야 합니다.

세금을 감소하는 두 개의 소득세 공제가 있습니다. 첫째, 자영업에서 들어오는 순소득은 납부하는 총 사회보장 세금의 반으로 감소됩니다. 고용주의 사회보장 세금 분담이 피고용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용인들이 세법에 의하여 취급되는 것과 유사한 방법입니다.

둘째, IRS Form 1040에서 사회보장 세금의 절반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 후 총소득을 결정할 때 반드시 총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항목별 공제가 안되며, Schedule C에 올려서는 안됩니다.

자영업 소득 이외에 급여도 받는다면, 급여에 대한 세금이 먼저 납부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총 소득이 \$128,400 이상 될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도 급여 소득이 \$30,000이고 자영업 소득이 \$40,000이라고 할 때, 급여와 자영업 소득 두 군데 모두에서 적절한 사회보장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2018년도에 급여가 \$87,700이고 자영업 순소득이 \$40,900인 경우, \$128,400 이상의 소득에 대하여 귀하는 이중으로 사회보장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귀하의 소득에서 \$87,700에 대한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세금으로

7.65 퍼센트를 원천징수할 것입니다. 자영업으로 번 첫번째 \$40,700에 대하여 귀하는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세금으로 15.3 퍼센트를 내야하고, 순소득에서 나머지 \$200에 대하여 메디케어 세금으로 2.9 퍼센트를 내야 합니다.

근로 크레딧

사회보장 연금을 받으려면 일정 기간 이상 일을 하고 사회보장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얼마나 오래 일을 해야 하는가는 생년월일에 따라 다르지만 누구든지 10년(40 크레딧) 이상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2018년, 순소득이 \$5,280 이상이며, 연간 최대 크레딧인 4 크레딧을 쌓게 됩니다 - 매 \$1,320 당 1 크레딧이 주어집니다. 순소득이 \$5,280 미만이면, 이 안내서 뒤에 설명한 선택적 방법을 이용하여 크레딧을 쌓아야 합니다.

저희는 사회보장에서 적용되는 모든 소득을 사용하여 사회보장 연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법이 요구하는대로 모든 소득을 빠짐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순소득 계산하기

사회보장에서 순소득은 자영업에서 번 총소득에서 비즈니스 비용과 감가상각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어떤 소득은 사회보장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순소득을 계산할 때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 주식 배당금, 채권 이자 (주식과 증권 거래인으로서 받은 것은 제외);
- 대출 이자 (돈을 대출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제외);

- 건물 임대료 (부동산 에이전트이거나 주로 세입자의 편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외); 또는
- 제한동업(limited partnership)으로 번 소득.

선택적 방법

귀하의 실제 순소득이 \$400 미만이며, 그 소득도 선택적 보고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사회보장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농사에서 번 소득, 비농사 소득, 또는 양쪽에서 모두 소득이 있을 경우 선택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농사 소득을 보고할 때 선택적 방법은 일생을 통해 오직 5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사 소득을 보고할 때 선택적 방법 사용 한도는 없습니다. 그 방식은 이렇습니다:

- 자영 농사에서 총소득이 \$7,800 미만이거나 또는 순 농사 이익이 \$5,631 미만이며, 총 농사 소득 ("0" 미만은 안됨)의 3분의 2 또는 \$5,280 중 적은 액수를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 비농사 자영업에서 순소득이 \$5,284 미만이고 또한 총 비농사 소득의 72.189% 미만이며, 자영업에서 순소득이 이전 3년 중 최소 2년간 \$400 이상이었을 경우.
- 귀하는 농사 및 비농사 보고방법을 둘 다 사용할 수 있으며, 농사와 비농사 자영업에서 총 실제 순소득보다 적은 금액을 보고할 수 있지만, 비농사 자영업에서 실제 순소득보다 더 낮은 금액을 보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순소득을 계산하는데 두 방법을 모두 사용한다면 \$5,280 이상을 보고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농장주의 경우, 매년 선택적 보고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전해에 최소한 \$400의 실제 순소득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기타 총 농장 수익, 순 농장 및 비농사 수익 액수는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IRS Publication 334, *Tax Guide for Small Business* (스몰 비즈니스 세금 가이드), 및 IRS Schedule SE 및 기입 방법에 추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책자 입수는 www.irs.gov를 방문하시거나 1-800-829-4933로 전화하십시오.

소득 신고 방법

연방정부의 세금보고 양식을 연소득이 \$400 이상 된 해 4월 15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Form 1040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미국 개인 소득세 보고서]);
- Schedule C (*Profit or Loss from Business* [비즈니스 손익]) 또는 Schedule F (*Profit or Loss from Farming* [농사 손익]) 중 적합한 것; 그리고
- Schedule SE (*Self-Employment Tax* [자영업 세금]).

이 양식들은 IRS 웹사이트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www.irs.gov 기입한 세금보고 양식과 스케줄을 자영업 세금과 함께 IRS로 보내십시오.

비록 소득세를 낼 것이 없어도 반드시 Form 1040과 Schedule SE를 기입하여 자영업 사회보장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규정은 사회보장 연금을 이미 받는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가족 사업의 경우

가족들이 함께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동업자가 될 수도 있고 합작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동업자로 사업을 함께 할 때는, 부부는 각자 사업 수익의 뜻을 별도의 자영업 세금보고서(Schedule SE)에 순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세금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업자들은 각자 보고해야 할 순소득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 퍼센트와 50 퍼센트). 또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업에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공동 세금보고를 한다면, 동업자로서 세금을 내는 대신 합작 회사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별도의 Schedule C 또는 C-EZ를 각자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국에 연락하기

사회보장국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 전화, 직접 방문 등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고 봉사하기 위하여 여기 있습니다. 80년 이상을

사회보장국은 수 백 만 명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인생 여정을 통하여 연금과 재정적 보호를 제공하여 그들의 오늘과 내일이 안정되게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웹사이트 방문

사회보장국에 어디서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웹사이트입니다:

www.socialsecurity.gov 웹사이트에 할 수 있는 일:

- my Social Security 계정을 만들어 자신의 *Social Security Statement* ('사회보장 연금 내역서를') 검토하고, 소득을 확인하고, 연금 확인 편지를 인쇄하고, 연금 이제 계좌 정보도 변경하고, 메디케어 카드 재발급을 요청하고, SSA-1099/1042S 재발급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메디케어 처방약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Extra Help 신청;
- 은퇴, 신체장애 및 메디케어 혜택 신청;
- 출판물 찾기;
-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한 답; 그리고
- 그밖에 여러 가지!

일부 서비스는 오직 영어로만 제공됩니다. (한국어) 정보를 원하시면 Multilanguage Gateway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회보장국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저희는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통역 서비스는 전화할 때 또는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직접 방문할 때 모두 제공됩니다.

전화로 연락

인터넷 접속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하여 저희는 전화로 많은 자동화 서비스를 하루 24시간, 주 7일 제공합니다. 톨프리 **1-800-772-1213**로 전화하시거나 청각 장애가 있으신 분은 TTY **1-800-325-0778**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직접 대화를 원하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7 시에서 오후 7시 사이 전화 응답해드립니다. 이 시간대에는 통화 중일 때가 많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언제든지 봉사해 드리겠습니다.



Securing today
and tomorrow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Publication No. 05-10022-KOR | January 2018
자영업자인 경우

If You Are Self-Employed (Korean)
Produced and published at U.S. taxpayer expense
미국 납세자가 낸 돈으로 제작 및 출판되었음